

의안번호	2123938
의 퇴 인	윤재옥의원
회 답 일	2023.9.19.
추계번호	23B3690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 (기본방향)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달빛고속철도를 건설하여야 함 1. 영·호남 간 여객·물류의 확장과 향후 미래 수요를 반영한 복선화 및 첨단화 추진 2. 철도 관리 및 철도차량 운행에 대한 안전이 확보된 고속철도의 신속한 건설 3. 영·호남 간 지역화합과 상생발전 4.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 발전	의무규정
2	안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3	안 제8조 (기본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달빛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함(제1항)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1. 달빛고속철도의 현황 분석 2. 달빛고속철도의 수요전망 3. 고속철도 건설의 경제성·타당성과 그 밖의 관련 사항의 평가 4. 개략적인 노선 및 차량 기지 등의 배치계획 5. 고속철도의 시·종점 6. 공사 내용, 공사 기간 및 사업시행자 7. 개략적인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8.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9. 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진 대책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4	안 제10조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제9조에 따른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건설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음(제1항)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의무·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2. 사업 구역 3. 자금조달계획 4. 건설사업 시행기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안 제12조 (주변지역개발사업)	시·도지사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속철도역사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 지정·변경 절차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6	안 제13조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둠(제1항)	의무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7	안 제14조 (재정지원)	국가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 및 주변개발예정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	재량규정
8	안 제15조 (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하천 점용료·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음	재량규정
9	안 제20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특례)	제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근거규정
1	안 제3조(기본방향)	• 미대상 : 선언적 규정
	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	안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안 제13조(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	
	안 제14조(재정지원)	
3	안 제10조(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안 제12조(주변지역개발사업)	
	안 제15조(부담금 등의 감면)	
	안 제20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특례)	

2. 상세사유

- 제정안은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의 신설,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 및 주변개발예정지역의 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경우 추가재정 소요가 예상됨
- 국토교통부는 현재 달빛고속철도 사전타당성조사¹⁾를 진행중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지역, 시·종착점 등이 미확정되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8조)·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안 제13조)·재정지원(안 제14조) 등에 따른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다만, 국토교통부가 현재 추진중인 사전타당성조사를 바탕으로 추산한 사업비는 [참고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1) • 과제명: 광주송정~서대구 단선전철 사전타당성조사
 • 과제수행자: 국가철도공단
 • 기간: 2023년 연도말 완료예정

□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안 제10조)·주변지역 개발사업(안 제12조)

- 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승인 받도록 하고 있고, 시·도지사가 달빛고속철도역사 예정지역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 범위의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하며, 주변지역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시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그런데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이어서 실시계획 수립 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고,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 지정·변경 절차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점, 현재 달빛고속철도 노선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주변개발예정지역을 특정하기가 곤란한 점, 해당 지역별 개발사업의 구체적 내용 등이 불확정적인 점 등 현시점에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부담금 등의 감면(안 제15조)

-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하천 점용료·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외수입 감소가 예상됨
- 그런데 현재 동 사업지역별로 부과될 부담금·점용료·사용료 등의 규모, 감면율 등을 특정하기 곤란하여 세외수입 감소분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특례(안 제20조)

- 제정안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게 될 때에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런데 현재 동 사업 시행 지역 내 체육시설 설치계획, 지원규모 등 추계에 필요한 기초정보가 부재하여 현시점에 관련 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IV. 부대의견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현재 달빛고속철도 사전타당성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고, 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 노선 및 시·종착점 등이 불확정적인 상황에서 관련 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참고자료 1]의 추계 결과는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이현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

[참고자료 1] 달빛고속철도 관련 재정소요 추계결과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1.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8조)

- 달빛고속철도 현황분석, 수요전망, 경제성·타당성과 그 밖의 사항에 대한 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 등)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비용은 국토교통부 추산결과 2년 동안 165억원 예상

[표 1] 기본계획 수립비용 추정 결과

(단위: 억원)

	N년도	N+1년도
기본계획 수립비용	65	100

주: N은 사업시작년도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2.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안 제13조)

-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 운영비는 국토교통부 추산결과 매년 3억원 규모로 예상

[표 2]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 운영비용 추정 결과

(단위: 억원)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합계	3.0	3.1	3.2	3.4	3.5
일반수용비	0.4	0.4	0.5	0.5	0.5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0.1	0.1	0.1	0.1	0.1
특근 매식비	0.1	0.1	0.1	0.1	0.1
임차료	0.8	0.8	0.9	0.9	0.9
부서운영비	0.0	0.0	0.0	0.0	0.0
국내여비	0.9	0.9	1.0	1.0	1.0
국외여비	0.1	0.1	0.1	0.1	0.1
사업추진비	0.3	0.3	0.3	0.3	0.3
관서 업무추진비	0.2	0.2	0.2	0.3	0.3
직책수행경비	0.2	0.2	0.2	0.2	0.2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3. 재정지원(안 제14조)

□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 총사업비는 국토교통부 추산결과 향후 12년간 11.3조원 예상

- 제정안에 따라 국가가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비, 주변지역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

[표 3] 총사업비 추정결과

(단위: 억원)

구 분	총사업비	사업준비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시공 및 준비단계 (공사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합계	112,999	1,401	1,401	1,401	6,410	23,525	25,707	26,288	21,146	5,722
공사비	91,172	—	—	—	4,559	18,234	22,793	22,793	18,234	4,559
노반	61,897	—	—	—	3,095	12,379	15,474	15,474	12,379	3,095
정거장	2,298	—	—	—	115	460	574	574	460	115
궤도	4,942	—	—	—	247	988	1,235	1,235	988	247
건축	748	—	—	—	37	150	187	187	150	37
시스템	12,230	—	—	—	612	2,446	3,058	3,058	2,446	612
차량기지	769	—	—	—	38	154	192	192	154	38
부가기차세	8,288	—	—	—	414	1,658	2,072	2,072	1,658	414
용지보상비	3,843	—	—	—	1,153	2,690	—	—	—	—
시설부대비	6,128	1,273	1,273	1,273	115	462	577	577	462	115
설계비	3,820	1,273	1,273	1,273	—	—	—	—	—	—
감리비	876	—	—	—	44	175	219	219	175	44
기타	1,432	—	—	—	72	286	358	358	286	72
예비비	10,109	127	127	127	583	2,139	2,337	2,337	1,870	467
차량구입비	1,742	—	—	—	—	—	—	581	581	581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참고자료 2] 국토교통부 달빛내륙철도(광주~대구) 사업 추진현황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사업개요(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기준)

- 사업목적 : 영호남 동서축 철도망 구축으로 지역 간 교류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 촉진
- 사업내용 : 광주~대구간 198.8km 단선전철 건설
- 총사업비 : 45,158억원
- 사업기간 : 미정

□ 추진경위

- 2016.6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검토사업 반영
- 2017.7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 2021.12 : 사전타당성조사 착수(철도공단, 2021.12~2023.12)

□ 달빛고속철도 건설비용 관련 선행연구

- 2019년 국토교통부 “대구~광주 철도건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실시
(단선): 총사업비: 4조 5,158억원 추산
- 2021년 국토교통부 “광주송정~서대구 단선전철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실시
(단선)
 - 국가철도공단(2023년 12월 말 완료 예정)